

내서스포츠센터 프로그램 도급강사 공개경쟁모집 공고

내서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우수 강사진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년 7월 13일

내서스포츠센터팀장

I 모집인원: 1명

- 계약기간: 2026. 8. 1. ~ 12. 31.
- 모집종목: 플로우번지

모집분야	강습일	강습시간	배분율(%) (공단:강사)	인원	지원자격
플로우번지	화, 목	09:00 ~ 09:50	55:45	1명	- 번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지도경력 6개월 이상인 자
	화, 목	10:00 ~ 10:50			

II 기본(공통)자격

1. 주소지, 성별, 학력 제한 없음
2.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
3.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(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)
4.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성범죄의 해당자는 선발될 수 없음.
5. 창원시설공단 도급강사 운영계약 지침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제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급강사로 계약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0.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
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Ⅲ

전형일정 및 방법

가. 전형일정

- ▶ 모집공고: 2026. 7. 13.(월) ~ 7. 23.(목)
- ▶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

구 분	접수기간	서류심사	면접심사	합격자발표	계약체결
일 정	7. 16.(목) ~ 7. 23.(목)	7. 24.(금)	7. 27.(월)	7. 28.(화)	프로그램 운영 시점
방 법	방문접수 (우편불가)	서류적격심사, 경력증명서 대조	블라인드 면접시험	개별통보	계약체결

		등			
--	--	---	--	--	--

- ▶ 접수처: 내서스포츠센터 2층 관리사무실(T:055-210-8153) / 평일 09:00~18:00

나. 서류제출

- ① 강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프로그램 운영계획서
- ※ 지원 서류: 공단홈페이지 → 알림마당 → 채용정보(공고문 첨부)에서 다운로드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/ 공정채용 확인서(자필작성)
- ③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(자필작성)
- ④ 경력증명서
 - ▶ 실무경력은 공고일 이전으로 계산, 반드시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처,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의 연락처, 확인(서명 등)이 포함되어야 함.(미기재 시 불인정)
- ⑤ 주민등록초본(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/ 본인만 기재)
- ⑥ 자격증 사본 ※ 제출된 서류의 원본 대조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무효처리 함.)

다. 전형방법: 지원서 접수 → 서류전형 → 면접심사 → 최종합격자 선정

- ▶ 면접심사(블라인드 심사)

구분	소개	공기업 이해도	프로그램 이해	책임감/성실성	인터뷰 자세
면접	100점	25점	25점	25점	25점

라. 최종합격자 결정

- ▶ 면접시험(면접위원 점수 산술평균)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
- ▶ 동점자 발생 시 아래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①	취업지원대상자
②	사회적약자(북한이탈주민, 장애인)
③	『창원시 다동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에 따른 경력단절여성
④	면접평가 우수자(‘상’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, ‘상’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‘중’의 개수가 많은 사람)
⑤	청년의무고용대상자
⑥	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

- ▶ 최종합격자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,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

있을 시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

IV

가 점 부 여

가. 국가보훈처 “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”에 기재된 가점 적용 5 ~ 10점

나.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에 의거 가점 적용 3점

※ 위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(하나만 선택 가능)

다.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,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

라. 동점자 발생 시,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은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

V

공 통 사 항

가.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

▶ (합격취소) 응시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,

공단 「도급강사 계약 지침」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▶ (응시제한)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

우

·도중 모집절차 진행을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
·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

나.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모집관련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

~

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다. 해당 선발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라. 예비합격자는 모집인원 대비 차점자 1명씩이며 최종합격자가 계약 중 사정 의하여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.

마. 내부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,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.

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서스포츠센터 사무실(055-210-8153)로 문의바랍니다.